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57호, 2023. 4. 18. 공포, 2024. 1. 1. 시행)됨에 따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무부 등과 합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21. ~ 10. 31.) 예정

제 호

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)

- ①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)의 대상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한다.
- ②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
 2.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-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④ 시장등(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제3항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

도로교통공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실태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작성한 도면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3(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)</u> ①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)의 대상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한다. ②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.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

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시장등(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4제3항 및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6조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실태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작성한 도면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.